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117호(2005.3.10)

##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요령 개정 안내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우리 원이 추진하고 있는 제품인정 분야의 관련고시 3개를 개정고시 함.
- 제품인정(Korea Accreditation System : 한국제품인정기구)이란?  
인정기구가 어떤 기관에 대하여 자격 있는 평가사가 정해진 기준(ISO/IEC GUIDE 65 : 제품 인증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구사항)과 IAF에서 정한 지침문서 기타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제품의 관리수행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에 반하여 인증(Certification)이란? 제3자기관이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절차를 말함.
- 제품인정종류를 보면 단순히 제품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 \*Type 1 : 샘플에 대한 형식시험
  - \*Type 2 : 샘플에 대한 형식시험과 전체제품대표
  - \*Type 3 : 형식시험과 시장사후관리
  - \*Type 4 : 형식시험과 공장사후관리
  - \*Type 5 : 형식시험과 공장 및 시장사후관리
  - \*Type 6 : 형식시험과 품질시스템 평가. 제품샘플은 시장, 생산공장, 무작위 시험검사와 같이 6가지타입의 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음.
- 이번의 개정은 제품인정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내부감사시 지적된 내용과 제품인정의 강화 방안을 보완하는 것으로 2004년7월12일에 개정한 고시를 개정하는 것임.
- 개정요지를 정리하면
  -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ISO/IEC Guide 2:1996 규격과 ISO/IEC 8402:1994 규격이 통폐합이 되어 ISO/IEC 17000:2004 와 ISO/IEC9000:2001 로 각각 수정이 되었고 \*제8조 위원회



위원 위촉에서 중간에 ISO/IEC 17011:2004의 4.3.4항에 따라 다음을 추가

~“인정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분야의 이해당사자 대표로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정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제19조 인정신청 및 평가의 ①항5에 내용 추가

“인증기관의 운영 또는 활동으로 발생한 책임 등이 포함된 적절한 협정 증명서(예를 들면 책임보험증서 사본 등)”

\*별지 제5호 서식 대표자 사약서를 제조업체의 과실방지대책의 강화를 위해 다음사항을 추가

~“기관 및 당사자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기관 및 개인책임포함)을 지겠습니다.”~

\*제19조 인정신청 및 평가의 ②항2에 다음내용 추가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 제10호를 따른다.

2002년부터 유럽과 한국인정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산업분류표를 삽입.

\*제21조 인정 및 공고내용을 미국, 이태리, 호주의 인정서에 맞춰 다음과 같이 수정

~3. 법인주소, 사업장주소

4. 인정분야, 적용규격, 인정범위

5. 유효기간

\*제24조 사후관리의 ⑤⑥항에 KAS사후관리의 강화를 위해 다음을 추가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실적을 6개월마다 KAS사무국에 보고(설문조사 포함)한다. 다만, 현지평가를 받은 때에는 제외한다.

사후관리를 이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시는 그 사유를 KAS사무국에 보고 해야 한다.”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제27조③항에 KAS행정처분의 강화방안으로 추가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시 사실에 대한 공고 외에 관련기관에 해당 인증마크의 사고내용에 대한 내용을 공표한다.

###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개정고시

\*“입금확인증명서”를 서식화하여 2.2.2에 삽입


\*5.17의 현장입회평가의 서류를 실제상황에 일치시킴

~ 최초로 인정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특별사후관리 받는 기관은 제품인증 프로세스에 따른 입회평가를 [별지 제4호 서식 3호 입회평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8.에 검증결과 보고서를 작성비치토록 추가

“평가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별지 4호 서식(4)]에 의한 검증결과 보고서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

\*6.3에 제조업체의 불량품생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제재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인증마크 오·남용 등 중요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KAS는 해당 제조업체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인증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중 개정 법률안

### I. 法案 主要內容

#### 1. 제안 이유

- 불법·불량전기용품 유통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
  - 불법·불량전기용품의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정기검사를 의무화 함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2. 주요골자

- 안전인증대상 중고전기용품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별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안전인증기관은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검사실적이 우수한 경우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불법전기용품조사 및 확인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0조2 신설)
- 불법전기용품 조사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사무로 하고, 불법·불량전기용품의 파기·수거 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위임업무는 지자체장에게 이양함(안 제8조 및 제11조)
- 전기용품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기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함(안 제15조)



## II. 주요골자별 개정사유

### 1.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도입

#### □ 개정내용

- 중고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 □ 개정의 필요성

-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제조업자만이 받도록 규정되어 외국에서 소비자로부터 수집된 수입중고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이를 수입하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재 불법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1999년부터 사무용 전기용품 등이 관세청의 “세관장확인대상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전기용품의 수입이 계속 증가

(예) ( '00) 5,016대 → ( '01) 5,658대 → ( '02) 7,583대 → ( '03) 7,939대

- 중고 전기용품 수입업자들은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함

\* 안전검사 기준은 안전인증 기준을 준용하고 검사방법,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함(안 제5조의2)

### 2. 인증기관의 정기검사 의무화 및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 □ 개정내용

- 현재 인증기관이 정기검사를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정기검사에 대한 제조업자의 회피 등으로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인증기관의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실적이 우수한 경우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함.

#### □ 개정 필요성

- 현재 안전인증기관이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조업체의 정기검사 회피로 실효성 있는 검사가 미흡하여 안전관리에 문제 발생.

- '04년도의 경우, 전체 검사대상 업체 중 약 52% 만이 검사를 받음



- 또한, 제조업체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동일한 성능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법제5조제5항)하고 있으나,
  -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으로 원가절감 등을 위해 저가의 부품사용 및 자체검사 미 실시로 불량률이 높음.
  - \*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율 : ('03) 29%, ('04) 44%
-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책임 안전관리의 확산을 위하여 검사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제도 필요.
  - \* 정기검사 면제기준은 시행령,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3.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설립

#### □ 개정내용

현재 지자체가 불법전기용품조사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불법전기용품(특히 수입품)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을 설립함.

\* 현재 설립되어 있는 기관을 법정기관으로 하여 전문화함.

#### □ 개정 필요성

- 제품안전은 식품·환경과 함께 세계 각 국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하는 추세임.
- 전기용품에 대한 관세청의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제외로 불법 수입제품 조사·단속 및 교육 등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
- 현재 시·도는 인력·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형식적인 단속업무 실시
  - 2004년 16개 시·도 중 13개 시·도는 적발 실적이 없음

〈 불법 전기용품 적발 실적 〉

구 분	2003	2004. 12 현재
시·도	33업체(서울25,대전7,경남1)	30업체(서울20,대전9,광주1)
전기제품안전진흥원	18업체	92업체
기술표준원	-	52업체



#### 4. 시·도 위임사무를 이양사무로 전환

- 개정내용
  - 현재 위임중인 불법전기용품의 파기·수거 명령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불법전기용품조사 및 과태료 부과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시·도시사의 공동사무로 규정함
- 개정 필요성
  -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 및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 권한 이양이 필요함

#### 5. 법규위반 시 처벌기준 정비

- 개정내용
  - 거짓 등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개정 필요성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용품안전규정위반 시 처벌기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유사법률(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처벌기준과 균형을 이루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의 차이점

구 분	안 전 인 증	안 전 검 사
대 상	신제품 전기용품	중고 수입전기용품
인증 주체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시험기준	안전기준	좌동
정기검사	대상	비대상
자체검사	대상	비대상
인증방법	모델별 인증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은 안전인증면제
인증서	안전인증서 발급	안전검사합격증 발급 (수입시마다)
인증서 유효기간	계속 유효	1회성
표시방법	제조업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표시 사항을 제품에 부착	수입판매업자는 좌동사항과안전검 사필증을 제품에 부착





〈참고2〉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품목(216품목)

구 분	품 목 명	품 목 수
1. 전선 및 원코드	①합성수지 절연전선 ②합성수지 케이블 ③합성수지코드류 ④고무 절연전선 ⑤ 고무케이블 ⑥고무 코드류 ⑦고무 용접용케이블 ⑧고무 실리콘 절연전선 ⑨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케이블 ⑩ 전원코드 세트	10
2. 전기기기용 스위치	①마이크로스위치 ②로터리스위치 ③레버스위치 ④로커스 위치 ⑤푸시버튼스위치 ⑥푸시풀스위치 ⑦지동복귀스위치 ⑧코드스위치 ⑨전기기기용 차단기 ⑩전자개폐기	10
3.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캐패시터	①X·Y캐패시터 ②전과장해억제용 전원필터 ③형광등용 캐패시터	3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①상호연결 커플러 ②일반플러그 ③일반콘센트 ④퓨즈내장형 플러그 ⑤기기의 콘센트 ⑥스위치내장콘센트 ⑦어댑터 ⑧인터록 ⑨인터록 및 스위치내장콘센트 ⑩일반스위치 ⑪전자식 스위치 ⑫리모트콘트롤 스위치 ⑬시간지연스위치 ⑭케이블 릴	14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①소형퓨즈 ②퓨즈홀더 ③저전압퓨즈 ④온도퓨즈 ⑤배선용 차단기 ⑥누전차단기	6
6. 절연변압기	①전압조정기 ②가정용 소형변압기 ③교류어댑터	3
7. 전기기기류	①전기청소기 ②전기건조다리미 ③스팀다리미 ④전기탈수기 ⑤전기식기세척기 ⑥식기건조기 ⑦전기레인지· 전기오븐기 ⑧전기세탁기 ⑨전기면도기 ⑩전기이발기 ⑪전기토스터· 그릴 ⑫전기바닥청소기 ⑬회전형 전기건조기 ⑭전기보온기 ⑮전기프라이팬 기타 전기식조리기 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전기액체가열기 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스팀쿠커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담질기 전기침대 전기운수기 피부관리기 전기머리인두 모발건조기 모발말개 냉장·냉동기기 콤프레셔로 구동되는 제빙기 전자레인지 전기시계	104



구분	품목명	품목수
7. 전기기기류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전기충전기 전기스토브 전기 운풍기 레인지후드 전기 맞사지기 전기 순간온수기 냉방기 제습기 유체펌프 전 기건조기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디림질 프레스 납땜인두 납땜제거인두 권총형 납땜기 열가스성 도관용접기 가정용 필름용접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기열총 권총형아크접착기 전기온장고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전기스팀바스 전기사 우나비스 사우나비스용 전열기 스팀바스용 전열기 전기표면세척기 어항 관상어 용 히터 관상어용기포발생기 전기기포발생기 슬라이드투영기 필름스트립 투영기 OHP 필름투영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격살충기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축열식 전 기난방기 공기청정기 전기육절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자동판매기 전기 냉수기 선동기 송풍기 환풍기 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가슴기 전기분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104
8. 전동공구	①전기드릴 ②전기드라이버 ③전기그라인다 ④포리서 ⑤전기샌더 ⑥전기원형톱 ⑦전기해머 ⑧전기금속가위 ⑨전기테이퍼 ⑩전기왕복톱 ⑪전기진동기 ⑫전기체 인톱 ⑬전기대패 ⑭전기잔디깎기 ⑮전기못총 라우터 트리밍기	17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①텔레비전수상기 ②텔레비전모니터 ③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④비디오카메라 ⑤튜너 ⑥던집기 ⑦디스크플레이어 ⑧라디오수신기 ⑨앰프 ⑩리시버 ⑪음성기록 계 ⑫음성 플레이어 ⑬오디오시스템 ⑭앰프내장형 스피커 ⑮전자악기 위성방송 수신기 직류전원 장치 게임기구 비디오폰 TV영상프로젝터 음질조절기 오디오프 로세서 디지털/아날로그변환장치 음성문배기 콤프레셔게이트	25
10. 정보·사무기기	①모니터 ②프린터 ③복사기 ④직류전원장치 ⑤무정전전원장치 ⑥스캐너 ⑦지폐 계수기 ⑧전자저울 ⑨금전등록기	9
11. 조명기기	①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 ②램프소켓 ③형광등용 소켓 ④형광 등용 스타터소 켓 ⑤조명기구 ⑥방전램프형안정기 ⑦형광등용 안정기 ⑧형광등용 전자식안정기 ⑨형광등용 전자식스타터 ⑩형광램프 ⑪안정기내장형램프 ⑫백열전구 ⑬네온변 압기 ⑭조명기구용 컨버터 ⑮전기소독기	15



〈참고3〉 안전인증 및 안전기준 현황

- 안전인증현황
  - 전기용품안전인증업체수 : 8,174업체(임의인증 122업체 포함)
  - 전기용품안전인증모델수 : 33,273모델 (임의인증 398업체 포함)

( '04. 12. 31 )

인 증 기 관 명	업 체 수			인 증 건 수 ( 모 델 )		
	국내제조	외국제조	계	국내제조	외국제조	계
산업기술시험원	521 (16)	1,364 (23)	1,885 (39)	3,222 (90)	5,681 (135)	8,903 (225)
한국전기전자시험 연구원	2,957 (35)	1,940 (14)	4,897 (49)	12,783 (89)	6,194 (18)	18,977 (107)
한국전자파 연구원	598 (28)	672 (6)	1,270 (34)	3,104 (59)	1,891 (7)	4,995 (66)
누 계	4,076 (79)	3,976 (43)	8,052 (122)	19,109 (238)	13,766 (160)	32,875 (398)

※ ( )은 임의 인증 현황

- 안전기준현황( '04. 12. 31 )
  - 안전기준 수 : 694종
    - 강제적용 안전기준 : 225종
    - 임의적용 안전기준 : 469종



〈참고4〉 주요 국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구 분	내 용	인 증 기 관	비 고
미국(UL)	- 대상: 가정용 전기기기 및 부품 등 10,200여 품목 - 인증업체수: 40,000여개사 - 사후관리: 정기 2-4회/년, 수시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강제인증
유럽(CE)	- 대상: 모든 저전압전기기기 (50-1000V) - 사후관리: 시판품 조사	각 회원국이 지정	강제인증
일본(PSE)	- 대상: 가정용전기기기 112품목 (임의인증 340품목) - 사후관리: 1회/년	6개 민간인증기관	강제인증
중국(CCC)	- 대상: 가정용전기기기 100품목 - 인증업체수: 29,000여개사 - 사후관리: 1회/년	12개 민간인증기관	강제인증
싱가폴(안전)	- 대상: 가정용전기기기 14품목 - 사후관리: 시판품 조사 (1회/월) - 인증서 유효기간: 3년	PSB Co	강제인증
대만(S)	- 대상: 전기기기 41품목 - 사후관리: 제품에 따라 별도 지정	정부 (표준검정국)	강제인증

〈참고5〉 시판품 조사결과

구 분	품 목 명	조 사 결 과		
		조사건수	적합	부적합(부적합율)
2001년도	전기스토브등 7품목	199	20	179(90%)
2002년도	전기매트등 15품목	343	62	281(82%)
2003년도	면도기등 6품목	103	73	30(29%)
2004년도	압력밥솥등 28품목	234	129	105(44%)



〈참고6〉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발생 현황

- 2003년도 총 화재발생 건수 : 31,372건 (151,590백만원)
- 화재발생 원인
  - 전기용품 부품재료의 취약화
    - 열과 충격에 취약한 부품을 사용하여 합선이나 누전에 의한 화재
  - 불법전기용품의 사용
    -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임의로 변경·설치하여 화재
  - 전기용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 사용자의 전기에 관한 상식부족 및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
- 전기 화재 발생건수 추이
  - 전체 화재 31,372건중 전기로 인한 화재가 10,670건으로 34%임

구 분	'99	'00	'01	'02	'03	증감율
계	11,204	11,796	12,300	11,202	10,670	-0.3%
합 선	8,572	8,770	9,325	8,743	6,994	-2.7%
과부하	767	880	961	869	952	4.1%
누 전	797	815	897	522	633	-1.5%
접촉불량	191	140	167	183	369	19.9%
기 타	877	1,191	950	885	1,722	20.8%

□ 전기용품 분야별 화재 발생 현황('03)

구 분	건 수	백분율(%)
전선 등 전기배선	3,122	49.9
가전기기	1,617	25.9
조명기기	894	14.3
배선기기	620	9.9
계	6,253	100



〈참고7〉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조직현황

□ 주요사업

- 전기용품 안전기준 발간·보급에 관한 사업
-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에 관한 교육·출판 사업
- 제조물 책임관련 분쟁·조정 사업
- 산업피해 조사 사업
- 전기용품에 관한 자료조사 및 통계생산

□ 인원현황

구분	원장	부장	차장	과장	계장	기타	계
현원	-	1	2	1	4	5	13

\* 이사장(업체대표 : 김봉균)은 비상근임.

□ 예산현황 ('04)

- 수수료 : 288,840 (용역, KS심사, PL보험)
- 교육 : 41,900 (안전관리, 무역실무 등)
- 발간수입 : 99,000
- 기타 : 258,000

〈참고8〉 인증기관 정기검사 결과

구분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연구원		계	
	실사업체	부적합업체	실사업체	부적합업체	실사업체	부적합업체	실사업체	부적합업체
'03	333	1	2,037	3	664	6	3,034	10
'04	1,180	17	2,356	321	668	34	4,204	372

\* '04도 전체 검사대상업체 중 약52%가 검사 받음 